

(예시2)

- 2002. 2. 1. 견책처분
- 2005. 1. 10. 감봉1월 처분
- 2006. 9. 25. 정직3월 처분

☞ 선행 징계처분일인 2002. 2. 1.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(0월+1월+3월)과 말소제한기간(3년+5년+7년)을 합산한 기간인 15년 4월이 경과한 2017. 6. 1.에 견책·감봉1월·정직3월이 동시에 말소

4) 징계처분의 무효·취소

- 가)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징계처분일자로 말소함.
- 나) 법 제8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되고,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.

(예시)

- 2004. 3. 5. 정직3월 처분
- 2004. 5. 10. 무효 또는 취소 확정
- 2004. 7. 7. 감봉3월(재징계) 의결
- 2004. 7. 14. 감봉3월 처분

☞ 선행처분인 정직3월은 2004. 3. 5.자로 말소하고, 후행처분인 감봉3월은 2004. 10. 14.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2009. 10. 14.자로 말소

5)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

일정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 때

(예시1)

- 2004. 2. 5. 견책처분
 - 2006. 8. 15. 특별사면
 - 2006. 10. 1. 감봉1월 처분
- ☞ 견책은 2006. 8. 15.자로 말소하고, 감봉1월은 2006. 11. 1.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2011. 11. 1.자로 말소

(예시2)

- 2003. 2. 5. 견책처분
 - 2005. 1. 10. 감봉1월 처분
 - 2006. 12. 2. 일반사면
- ☞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각각의 징계처분기간(0월+1월)과 말소제한기간(3년+5년)을 합산한 기간인 8년 1월이 경과한 2011. 3. 5.에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, 말소예정일 이전에 일반사면이 있었으므로 사면일인 '06. 12. 2.자로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

(예시3)

- 2003. 2. 5. 견책처분(사면대상이 아님)
 - 2005. 1. 10. 감봉1월 처분
 - 2006. 12. 2. 특별사면
- ☞ 선행처분인 견책은 사면되지 않고 후행처분인 감봉 1월만 사면되었을 경우, 사면일 이전에 선행처분이 단일처분으로서의 말소제한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사면일인 '06. 12. 2.자로 견책과 감봉 1월 모두 말소